

[수시공시] 코람코전문투자형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33호 신탁계약 변경

조항	변경 전	변경 후	비고
제5조	제5조 (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)	제5조 (신탁계약의 효력 및 신탁계약기간)	신탁계약기간의 만기일 명시
	① (생략)	① (좌동)	
	② (생략)	② (좌동)	
	③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신탁 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	③ 이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5년간 으로 한다. 단, 최초설정일로부터 5 년이 경과하기 전에 투자신탁이 해 지되는 경우에는 해지일까지로 한 다. <본항 개정 2015.12.14>	
제37조	제37조(신탁계약의 변경)	제37조(신탁계약의 변경)	신탁계약 변경 시
	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 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	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 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, 전체 수익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. <본항 개정 2015.12.14>	수익자에게 통지

시행일 2015.12.14